# KISC 종합상황실 운영 지침

제정 2020.08.28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C 종합상황실(이하"상황실"이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법령과 다른 규정·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정보통신망"이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 색·송수신 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.
- 2. "사이버공격"이란 해킹·컴퓨터바이러스·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 망을 불법침입·교란·마비·파괴하거나, 전자문서·전자기록물을 위조·변조·절취·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.
- 3. "악성IP·도메인"이란 악성코드·악성앱 유포지, 피싱,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IP와 도메인을 말한다.
- 4. "팀장"은 상황실 운영 업무를 하는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」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상황실 인력 운영

- 제4조(상황실 운영 방식) ① 상황실은 서울청사(연중 상시) 상황실과 나주본원(평일 주간) 상황실로 이중화하여 운영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한 상황실 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, 야간 근무시간은 18:00부터 익일 09:00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근무 시작 시간 전 출근하여 상호 협

의된 방법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.

- ③ 서울청사 상황실 근무는 팀장의 승인하에 편성된 근무 명령에 의하며 상황실 근무 최소 인원은 서울청사 3명, 나주본원 1명으로 한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의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하여 유영할 수 있다.
- 1. 사이버위기경보단계 상향 조정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
- 2.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예외상황 발생 시 또는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근무 인수인계시에는 그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업무 태만 및 고의, 중과실 등으로 상황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황실 업무에 부적 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실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⑦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조(근무자 구성) ① 상황실 근무자는 원내 침해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조장과 2명 이상의 조원을 둔다.
  - ② 조장은 상황실 근무자 중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장의 판단하에 선임연구원 이하 직원 중에서도 임명 가능하다.
- 제6조(근무자 기본 조건) 24시간 365일 침해사고 탐지·예방·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실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- 1.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자
  - 2.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보유자
  - 3. 고혈압, 당뇨, 전염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자
- 제7조(결원충원) ① 상황실 근무 인력 결원에 대한 충원은 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② 단, 24시간 365일 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실 업무 특성상 신규 인력 충원 시 인사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5조를 충족하는 적합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
- 제8조(근무 기간) 상황실 근무 기간은 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수당 및 특근매식) 상황실 근무자의 수당 및 특근매식은 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3장 상황실 임무

제10조(침해대응 임무) ①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 국내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이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파
- 2. 국내외 보안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
- 3. 악성 IP·도메인 접속 차단 및 해제
- 4. 국내 민간분야 홈페이지 변조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
- 5. 침해사고 신고 접수 및 대응
- 6. 인터넷서비스제공자, 보안관제 기업 등 관련 업체의 네트워크 이상 유무 정기 점검
- 7. 공공·국방분야로부터 이관받은 민간분야 침해사고 대응
- 8. 보안 관련 기사 요약 및 전파
- 9.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점검
- 10.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 및 상황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② 사이버위기경보단계 상향 등 비상시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.
- 1. 주요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
- 2. 경찰청, 국정원 등 유관기관 비상 공조체계 가동
- 3. 위기평가회의 가동 및 운영지원
- 4. 전체 피해현황 집계 및 대응
- 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임무 및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조원에게 분담할 수 있고 조원은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.
- 제11조(기록유지 임무) ① 상황실 근무자는 사고상황, 파급피해·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위기사항을 작성·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위기상황과 관련된 문서 · 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워내 관련 규정에 따른다.
  - ③ 상황실 근무자는 위기상황보고·전파체계도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연락처,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평상시 보고 및 전파 등 임무) ①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에 따른 임무 수행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

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상황실 근무자는 정기·수시 보고시 파악된 사고상황, 파급피해·영향 및 대응 사항 등의 주요 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비상시 운영

- 제13조(비상시 상황보고 등) ①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침해사고 발생으로 종합상황실 시스템 및 업무 중단
  - 2. 사이버위기경보단계 상향 조정
  - 3. 재난, 재해 등으로 인한 상황실 업무 지장 초래
  - ② 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비상상황 전파 및 대응) ①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 상황이 파악되면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·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 기업·기관에 파급피해·영향,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황실 근무자는 시간대별 조치 및 확인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비상소집 등) ① 팀장은 내용에 따라 비상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 소집 인력 계획을 본부장에게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승인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비상 소집할 수 있다.
- ② 팀장은 제1항에 의해 비상소집된 인력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 외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<2020. 8. 28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